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 15)**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소매/홈쇼핑(525102)	정기	5,000억원대	지방청	

Tex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0X.9월 설립한 식품전문 홈쇼핑업체로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Text 증가추세에 있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인 □□의 계열회사임

Text - 농수산품의 높은 의무편성비중(60%)을 유지하면서도 TV홈쇼핑, T커머스,
Text E커머스, 카탈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계 상위기업임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al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기타수익항목누락	10104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매출에누리 과대계상				
	2	부당행위계산부인	1130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3	법인세 기타 항목	11606	임의포기 해외매출채권 소득처분 변경(기·사→기타소득)				

Text ○ 특이 사항

Text - ①항목은 유사한 업종·분야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Text 쟁점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방청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Text 25년 상반기 조사우수사례 발표한 사례이며 이와 동시에 교육자료를 제작

Text 하여 우수적출사례로 우리 국 커뮤니티인 G&D에 게재한 최초 조사 사례

Text - ②항목은 조사법인의 사원용 주택을 **특수관계법인이 직원 기숙사로 무상사용**

Text 하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관련비용 부인, 종합부동산세

Text **과세물건 추가로 적출**하여 각각 과세요건을 갖추어 모두 과세한 사례

Text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법인세 기타수익항목 누락(항목코드: 10104)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매출에누리 과대계상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경정청구) 조사법인은 '18년 유권해석에 따라 '19.5월 사업자가 부담한 Text 청구할인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21년 판례에 따라 2022.6월 신용 Text 카드가 부담한 청구할인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Text -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근거로 경정청구하여 인용 결정됨

- Text (수입금액 검증) 유권해석 및 판례 등에 따라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매출
 Text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적정하나
 - Text 조사팀은 조사법인이 수차례 걸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내역을 확인하고 Text 경정청구 내역 포함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함
- Text (신용카드 청구할인) 도·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

 Text 카드사와 사전약정을 통해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Text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Text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함
- Text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을

 Text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체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Text 납부하여 왔음
- Text O (유권해석 및 판례 등)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에 Text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크게 2차례에 걸쳐 유의미한 유권해석 및 판례가 Text 있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Text - '18년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

Text 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21년 신용카드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

Text 또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판례 등이 있었음

Table

해석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 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u>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u>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u>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u>

Table

심판 조심-2021-중-2746(2021.09.16.)

청구할인액은 고객이 상품 구매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바, <u>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u>이고, 청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ext O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 받는 경우에는 부가 Text 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Table

해석 법인46012-1202(1996.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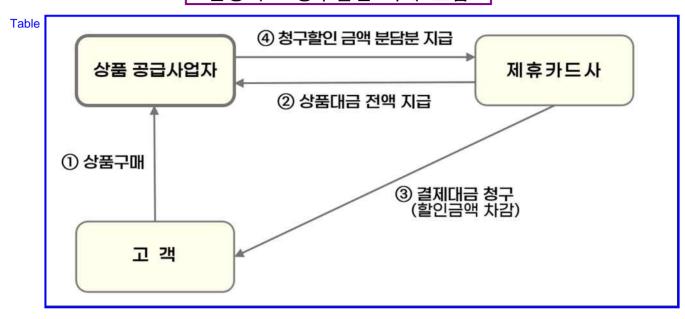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u>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u> 받는 경우에는 그 경 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익금에 산입</u>하는 것임

※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의2(1995)에 따라 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를 50% 경감 조치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신용카드 청구할인 거래 흐름 >



Text O (신용카드 청구할인) 소비자가 청구할인 대상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면 Text 카드사가 소비자의 결제대금 청구시 신용카드 청구시점에서 결제대금 Text 에서 차감하면서 차감액 중 사업자부담분을 조사법인에 청구하는 구조임

Text - 조사팀은 신용카드 청구할인 거래 흐름에서 조사법인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Text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2개월 뒤에 카드사가 다시 조사법인에 청구하므로
Text **청구한 전액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청구할인
Text 사업자부담분의 회계처리 내용을 검토함

Text 나. 사업구조를 반영하여 회계자료 분석

Text O (회계처리 검토) 조사법인은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고객이 Text 상품 주문시점과 매출인식시점이 상이하고 고객이 결제하는 시점과 수금 Text 되는 시점 또한 상이하고 적립금, 쿠폰 등 할인행사 및 반품이 많음

Text - 이에 따라 매출 가산, 매출 차감, 선수금, 미수금 등 여러 개의 계정을 혼합

Text 하여 사용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검토할 때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

- Text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매출이전에 결제가 되므로 매출선수금이 발생하고 Text 이와 동시에 수금이전에 결제되므로 카드 미수금이 발생함
- Text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일내 상품결제대금이 입금시 카드 미수금과 상계하고,
 Text 매월 말일 발송된 물품을 집계하여 매출액을 계상하여 매출선수금과 대체
 Text 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Text O (카드사와 정산) 조사법인과 각각의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프로 Text 모션을 사전에 약정하고, 대략 상품주문 2개월 후 신용카드사에서 약정에 따라 Text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프로모션 비용을 청구하고 조사법인은 이를 지급함
- Text (판매촉진비 처리) 조사법인은 사업자부담분 신용카드 청구할인 전액을

 Text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후, 분기별로 판매촉진비를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보아

 Text 매출에서 차감하여 순액 조정함
- Text O (매출에누리 과다계상) 조사법인의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카드사에 지급한 Text 신용카드 청구할인 사업자부담분 전액이 판매촉진비에 포함되고 이후 매출 Text 에누리와 같이 매출액에서 차감됨을 확인하고 카드사가 조사법인에게 발송한 Text 청구서를 징취하여 청구할인 프로모션 금액을 확정함
 - Text 조사법인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전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신용카드 Text 청구할인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만큼 매출에누리를 과다 계상함

Text < 조사법인에 제출한 회계자료 분석 >

- 24	A	R	C	U	э Н	1	1	K.
1	계정과목	계정항목	GL일자	전표번호 적요	차변	대변	원천	유형
2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VISA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1,552,830		NHQ상품매출	NHQ카드
3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VISA_홈쇼핑: 2020-03-	5 매입청구 13,056,475		NHQ상품매출	NHQ카드
1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국민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47,090,760		NHQ상품매출	NHQ카드
j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국민_홈쇼핑: 2020-03-2	5 매입청구 284,224,720	i e	NHQ상품매출	NHQ₹
5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롯데_카탈로그: 2020-0	-25 매입청구 24,709,640	9	NHQ상품매출	NHQ카드
7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롯데_홈쇼핑: 2020-03-2	5 매입청구 161,332,060	(NHQ상품매출	NHQ카드
3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비씨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58,168,330		NHQ상품매출	NHQ₹
)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비씨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327,723,520		NHQ상품매출	NHQ카드
0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삼성_카탈로그: 2020-0	-25 매입청구 30,128,730		NHQ상품매출	NHQ카드
1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삼성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186,554,260	e 2	NHQ상품매출	NHQ計⊑
2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신한_카탈로그: 2020-0	-25 매입청구 53,369,030	() %	NHQ상품매출	NHQ카드
3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신한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292,179,930		NHQ상품매출	NHQ카드
4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외환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2,956,890		NHQ상품매출	NHQ計⊑
5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외환_홈쇼핑: 2020-03-2	5 매입청구 20,622,120		NHQ상품매출	NHQFIE
6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농협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39,098,470	(4	NHQ상품매출	NHQ₹
7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농협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198,016,010		NHQ상품매출	NHQ카드
8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현대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15,271,810		NHQ상품매출	NHQ카드
9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현대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116,902,090		NHQ상품매출	NHQ₹
0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하나_카탈로그 : 2020-0	-25 매입청구 7,313,970		NHQ상품매출	NHQ카드
1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5	NHQ카드매입_20/03/25_1029391 하나_홈쇼핑 : 2020-03-2	5 매입청구 47,040,480	e s	NHQ상품매출	NHQ₹
2	선수금	선수금 선수금	2020-03-25	NHQ카드매인 20/03/25 1029391 카드 : 2020-03-25 매인	7	1.927.312.125	NHQ상품매출	NHQ카드

② 카드사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미수금과 상계함

4 A	В		D	1	3		L
1 계정과목	계정항목	GL일자	전표번호	적요	차변	대변	원천
8 현금성자산_수익증권	현금성자산_수익	11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신한_홈쇼핑-무이자:2020-03-25 매입청구	132,049,832		NHQ상품매
9 현금성자산_수익증권	현금성자산_수익	1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신한_홍쇼핑-일반:2020-03-25 매입청구	150,201,229	35	NHQ상품매
0 현금성자산_수익증권	현금성자산_수익	11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국민_홈쇼핑-일반:2020-03-25 매입청구	157,409,863		NHQ상품매
1 현금성자산_수익증권	현금성자산_수익	11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비씨_홈쇼핑-일반:2020-03-24 매입청구	176,183,809		NHQ상품매
2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VISA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552,830	NHQ상품매
3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VISA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3,056,475	NHQ상품매
4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국민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4	47,090,760	NHQ상품매
5 미수급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국민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284,224,720	NHQ상품매
6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롯데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	24,709,640	NHQ상품매
7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롯데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	161,332,060	NHQ상품매
8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비씨_카탈로그-입금계:2020-03-24 매입청구		35,740,690	NHQ상품매
9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비씨_홈쇼핑-입금계:2020-03-24 매입청구	-	313,716,480	NHQ상품매
0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업임금_20/03/27_1029423	삼성_카탈로그-입금계:2020-03-26 매입청구		38,565,460	NHQ상품매
1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삼성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86,505,360	NHQ상품매
2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신한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53,369,030	NHQ상품매
3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신한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	292,179,930	NHQ상품매
4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의환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2,956,890	NHQ상품매
5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의환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	20,622,120	NHQ상품매
6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농협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	39,098,470	NHQ상품매
7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농협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198,016,010	NHQ상품매
8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현대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	15,271,810	NHQ상품매
9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현대_홍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	116,902,090	NHQ상품매
0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하나_카탈로그-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7,313,970	NHQ상품매
1 미수금	미수금_카드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하나_홈쇼핑-입금계:2020-03-25 매입청구		47,040,480	NHQ상품매
2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	星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VISA_카탈로그-무이자:2020-03-25 매입청구	8,577		NHQ상품매
3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	星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외환_카탈로그-무이자:2020-03-25 매입청구	12,900	3	NHQ상품매
4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	豆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하나_카탈로그-무이자:2020-03-25 매입청구	21,965	-	NHQ상품매
5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정수수:	量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VISA_카탈로그-일반:2020-03-25 매입청구	26,781	3.0	NHQ상품매
6 카드수수료	카드가맹점수수:	료 2020-03-27	NHQ매입입금_20/03/27_1029423	외환_카탈로그-일반:2020-03-25 매입청구	52,644		NHQ상품매

③ 매월 말일 상품매출을 계상하여 선수금과 대체함

계정과목	계정항목	GL일자	전표번호	적요	차변	대변	원천	유형
부가세예수금	부가세예수금_과세	2020-03-31	NHQ매출-20/03/31_1046618	부가세예수금(과세)	0	9,766,112,570	NHQ상품매출	NHQ매출
선수금	선수금_선수금	2020-03-31	NHQ매출-20/03/31_1046618	선수금	127,184,526,565		NHQ상품매출	NHQ매출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과세	2020-03-31	NHQ매출-20/03/31_1046618	매출(과세)	0	97,661,291,692	NHQ상품매출	NHQ매출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면세	2020-03-31	NHQ매출-20/03/31_1046618	매출(면세)	0	19,756,748,303	NHQ상품매출	NHQ매출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영세	2020-03-31	NHQ매출-20/03/31_1046618	매출(영세)	0	374,000	NHQ상품매출	NHQ매출

④ 상품주문 2개월 후 카드사에서 청구할인 사업자부담분을 청구

米b KB 국민카드 www.kbcard.com 05175 서울 중로구 세문안로5길 50 KB국민카드 마케팅추진부 담당 감은영 대리 TEL, 02)6936-5325 FAX, 02)6936-4179 문서번호 : KB국민카드 마케팅추진부 136 2020. 5. 18 수 신: 참 조: 정구할인 프로모션 비용 청구(2020.3월)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하오며 그 동안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 사와 함께 진행했던 행사에 대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청구 하으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다 용 -가. 행사내용 - 청구할인 : 3만원이상 특정상품 5%청구할인 프로모션 나, 소요비용 (단위: 원) 행사월 비고 KB국민카드 소계 60,000,000 76,245,380 136,245,380 - CAP 6천만원 보 세부내역 답답지 말 별도 송부

Hyundai Card

0723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 / www.hyundaicard.com

담 당: 가명점마제팅팀 임수아 / Tel: 02-2167-5871 / sua.im@hcs.com

문서번호: AW5-20200515-001

수 신:

참 조: 아케팅 답당자님 귀하

제 육: 20/03 - 현대카드 공동 마케팅 정산의 건

- 1. 귀사의 일익 변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 당사는 귀사와 진행한 행사 비용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 청구할인 프로모션
- 2020/03 청구할인 매출 대상

11. 프로모션 비용 상세 내역

총 할인에		현대카드	기타
76,325,858	38.162,929	38,162,929	현대카드 Cap 0.40 억

2020.05.15

⑤ 카드사에 지급한 청구할인 사업자부담분에 대하여 판매촉진비 처리

계정과목	계정항목	GL일자	전표번호	부서	적요	차변	대변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09	20200309_11992_376136	편성기획실_TV편성기획팀	삼성카드 1월 청구할인 판족비(TV)	28,139,984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09	20200309_11992_376137	편성기획실_TV편성기획팀	BC카드 1월 청구할인 판촉비(TV)	2,386,914	
판매족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0	20200310_12245_376147	SB사업부_SB마케팅팀	SB사업부 1월 쇼핑북 삼성카드 청구할인	7,065,689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2	20200312_11992_376176	편성기획실_TV편성기획팀	1월 KB국민카드 청구할인 판촉비(TV)	3,264,264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6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K8국민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PC)	7,203,994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6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KB국민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모바일)	44,537,012	
판매촉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4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NH농협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모바일)	12,730,549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4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NH농협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PC)	19,558,932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7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BC카드 청구핡인 정산금액(PC)	16,991,375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7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BC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모바일)	33,474,674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5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삼성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PC)	11,213,721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5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삼성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모바일)	67,467,947	
판매족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3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현대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PC)	2,129,795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069_376213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1월 현대카드 청구할인 정산금액(모바일)	20,636,784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7	20200317_12245_376219	SB사업부_SB마케팅팀	SB사업부 1월 쇼핑북 K8국민카드 청구할인	9,160,790	
판매촉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8	20200318_11992_376259	편성기획실_TV편성기획팀	BC 2월 6대 홈쇼핑 통합 제휴카드 6% 청구할인 판족비(TC)	163,651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8	20200318_11992_376259	편성기획실_TV편성기획팀	BC 2월 6대 홈쇼핑 통합 제휴카드 6% 청구할인 판촉비(TV)	1,367,661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19	20200319_12245_376273	SB사업부_SB마케팅팀	SB사업부 1월 쇼핑북 농협카드 청구할인	7,650,480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19	20200319_12245_376275	SB사업부_SB마케팅팀	20년 2월 BC카드 청구할인	240,050	
판매족진비	판족_카드할인	2020-03-23	20200323_12069_376333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2월 BC 부자되세요 홈쇼핑 제휴카드 청구할인 정산;	25,749	
판매촉진비	판촉_카드할인	2020-03-23	20200323_12069_376333	편성기획실_MC편성기획팀	2020년 2월 BC 부자되세요 홈쇼핑 제휴카드 청구할인 정산;	998,281	

⑥ 분기별 판촉비를 상품매출에서 판매촉진비 전액를 차감하여 순액 조정함

계정과목	계정항목	GL일자	전표번호	부서	적요	차변	대변	유형
상품 <mark>매출</mark> 액	상품매출_과세	2020-03-31	GL_2020_8449690	경영지원_재무팀	[2020 1Q 결산조정]카드 청구할인 판촉비 순액 조정	0	- 834,878,666	NHQ계정대체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과세	2020-06-30	GL_2020_8831690	경영지원_재무팀	[2020 2Q 결산조정]카드 청구할인 판촉비 순액 조정	0	- 832,754,473	NHQ계정대체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과세	2020-09-30	GL_2020_9310690	경영지원_재무팀	[2020 3Q 결산조정]카드 청구할인 판촉비 순액 조정	0	- 1,707,892,552	NHQ계정대체
상품매출액	상품매출_과세	2020-12-31	GL_2020_9868691	경영지원_재무팀	[2020 4Q 결산조정]카드 청구할인 판촉비 순액 조정	0	- 1,730,308,528	NHQ계정대체

⁻ 정산방식 : 청구할인 현대카드 100% 선부담 후 제휴사 측에 분담비용 정산요청

Text 다.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과세논리의 타당성 견지

Text ○ 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하여 카드사에 지급한 전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Text 것을 납득하지 못해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Text < 과세논리 설명자료 작성·설득 >

Table

■ 경정예시

- · A사업자는 '24년도에 카드 청구할인으로 X상품 1개를 판매한 것으로 가정
- · X상품 판매가격(VAT 포함): 44,000원
- · 카드 청구할인: 판매가격의 5% 🖙 2,200원(VAT상당액 200원 포함)
- 사전 약정된 청구할인 부담비율은 사업자 부담 55%, 카드사 부담 45% □ 사업자 부담(55%) 1.210원 : 카드사 부담(45%) 990원
- (대금 흐름)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결제액 44,000원 전액을 A사업자에 입금하고, A사업자는 카드사에 청구할인액의 당사부담분 1,210원을 추후 지급·정산함
- (부가가치세) 상품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 가액에서 매출에누리인 청구할인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3,800원*임
 - * (매출액 40,000원 매출에누리 2,000원) x 10%
- (법인세) A사업자의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A사업자의 매출에누리 과다 계상 내역 >

(단위: 원)

구 분	①상품판매대가 (VAT포함)	②법인세 신고	비고
매 출액	44,000	40,000	
청구할인(당사부담분)	△1,210	△ 1,210	매 출에 누리
청구할인(카드사부담분)		△900	매 출에 누리
부가가 치 세 납부액	△3,800		
카드사부담분 당사입금액		990	익금산입
수입금액	38,990	38,880	차액 110원

- (①상품판매대가) 카드결제 대금흐름상 청구할인 전 상품대금 전액 44,000원을 카드사로부터 우선 지급받고 추후 당사부담분 청구할인액 1,210원(VAT포함)을 카드사에 지급 및 상품판매 관련 부가가치세 3,800원을 납부함
- ⇒ 최종적으로 A사업자의 상품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은 38,990원임
- (②법인세 신고) A사업자는 매출액 40,000원에서 청구할인액의 당사부담분 1,210원 및 카드사부담분 900원을 매출에누리로 차감하고,
- 청구할인 전 상품대금 전액을 카드사로부터 우선 지급 받았을 시당사에 입금되었던 카드사부담분 청구할인액 990원을 잡수입으로 익금산입함
- ⇒ 결과적으로 A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38,880원으로 신고함
- (수입금액 차이) 상품판매대가와 법인세 신고상 수입금액의 차이는 110원으로 동 금액은 당사 부담분 청구할인액 1,21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확인되며, 법인세 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 110원을 포함하여 매출에누리를 과다 계상함
-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동 부가 가치세 상당액 110원에 대해 익금산입 경정함

참 고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①카드결제 :	현금	44,000 /	선수금	44,000
②고객인도:	선수금	44,000 /	상품매출	40,000
			VAT예수금	4,000
③카드사청구	: 판촉비	1,210 /	미지급비용	1,210
④당사부담분	: 상품매출	1,100 /	판촉비	1,210
	VAT예수금	110		
⑤카드사부담분	: 상품매출	900 /	잡수입	990
	VAT예수금	90		
⑥VAT납부:	VAT예수금	3,800 /	현금	3,800

Text 라. 거래구조와 회계자료의 명확한 분석 및 처분유지

- Text O 조사법인의 거래구조와 회계자료의 명확하고 철저한 분석으로 거래시기
 - Text 상이, 다양한 계정, 복잡한 할인구조, 빈번한 경정청구로 복잡한 계산구조를
 - Text 차근차근 풀어 정당한 과세근거를 구축함
- Text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복잡한 계산구조로 인해 조사법인이 처리하고 있는
 - Text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아 다음 신고시에는 이런
 - Text 착오가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설명함
- Text O 조사법인은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 Text 조기결정 신청하여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 내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항목코드: 1130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 Text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사법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감가상각자료를
 - Text 검토하던 중 서울 강남 도곡동의 아파트(이하 '도곡동 주택')를 사원용
 - Text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Text 조사법인의 사업장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어 **도곡동과는 거리가**
 - Text <mark>멀리 떨어져 있어, 사원용 주택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mark>하고 사주 일개
 - Text 등이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Text (과다경비 등 부인) 도곡동 주택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 Text 부동산일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무관자산일 경우 보유시
 - Text 관리비용 등(감가상각비, 재산세, 지급이자)을 손금부인해야 함
- Text **(합산배제신청)** 도곡동 주택은 조사법인 사원용 주택으로 관리하면서 종합
 - Text <mark>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mark>되어 있음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부동산 공부서류 확인) 도곡동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국민

Text 주택규모의 아파트로 조사법인이 '09년에 △억원에 취득하여 조사당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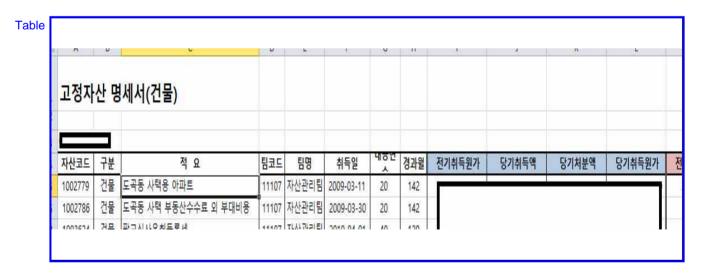
Text 보유 중으로 조사일 현재 매매시세는 △△억이상으로 확인됨

Text < 도곡동 주택 등기부등본 >

[]	} 7]	(소유권에 핀	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8)	소유권이전	1995년11월6일 제69418호	1995년9월12일 매매	소유자 서울 서울 1-20 부동산동 규정에 의
2	소유권이건	2003년9월30일 제97745호	2003년9월1일 매매	소유자 서울 1-20
3	소유권이전	2009년3월6일 제16658호	2009년3월3일 매매	소유자 서울 거래가액

Text O (사용현황 확인) 조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고정자산명세서를 Text 대사하여 도곡동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

Text < 고정자산명세서 중 >



- Text 직원이 도곡동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 Text 그 직원 이름과 직책을 질문하였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고 소명**
- Text 조사팀은 조사법인과 도곡동 주택에 현장조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자
 Text 했으나 조사법인에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자 하는 의도를 인지함
- Text O (정보분석) 정보분석에서 도곡동 주택의 주택별 거주이력분석으로 확인한바 Text 11년부터 조사법인의 직원이 아닌 H씨가 일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Text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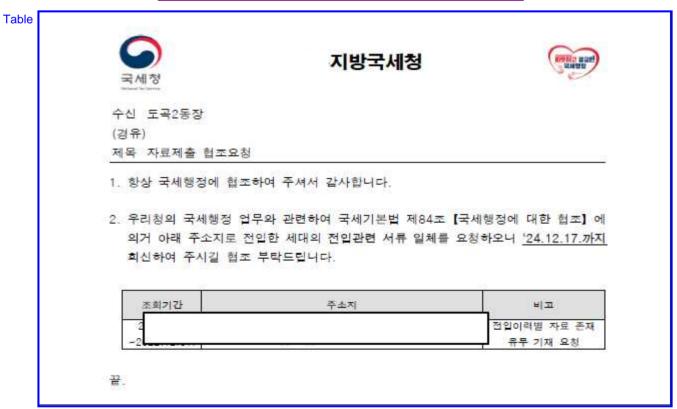
Text 나. 유관기관 정보수집

- Text O (협조공문 발송) 직원이 사원용 주택으로 전입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 재직 Text 증명서 및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도곡동의 관할 지자체에 Text 도곡동 주택에 대한 전입관련서류 일체를 요청함
 - Text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전입신고서 및 전입자명부만 회신하여

 Text 재직증명서 등 그 외 서류를 요청한바 관련 서류는 5년 마다 폐기하고 있어

 Text 회신한 서류외 추가서류는 없다고 유선으로 회신받음

Text < 조사팀이 지자체에 송부한 협조공문 >



Text < 지자체에서 회신한 공문 >

Table

"청렴의 불결" 강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2

강 남 구

· Borgon 도시 미래 pre 강남

수신 지방국세청장(조사1과장)

(경유)

제목 국세행정에 관한 협조요청(전입내역 등)에 관한 회신

- 지방국세청 조사1과-1169(2024.12.12.)호와 관련입니다.
- 국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 파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에 따라 해당 주소지의 전입 관련 서류(비밀번호3423)를

불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로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입신고서(남부순 1. 1부.

2. 주민등록 전입자명부 1부. 끝.

Text 다. 조사팀의 철저한 과세정보수집으로 인한 처분유지

Text O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적극적 자료 수집) 조사팀은 전입신고서와 정보

Text 분석 자료, H씨의 주민등록초본, 근로소득명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Text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수차례 인터뷰 실시**로 조사대상연도에 실제 사실

Text 관계를 파악함

Text - 이에 따라 H씨의 전입이력과 H씨의 근로소득명세서 상 현 지주사 근무

Text 등을 근거로 H씨의 H씨의 근무지 및 직책, H씨의 도곡동 아파트 실제

Text 거주사실 여부 및 거주이유 등을 소명 요청하였고,

Text - 조사법인의 사원용 주택에 H씨가 전입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질문한

Text 결과 H씨는 지주사 회장의 수행비서로서 지주사 회장 지근에서 거주하는

Text 것이 불가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함

Text - 또한 조사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지주사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

Text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후회하며 실토함

Text 라. 하나의 사실관계로 3건의 조사항목을 적출

- Text (3건을 적출) 조사법인이 사원용 주택으로 관리하던 도곡동 주택의 이용실태

 Text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포함하여 조사항목 3건을

 Text 적출하여 과세함
- Text (①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임대의 경우 시가를
 Text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
 - Text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조회를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작아 매매거래가 Text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확인하기 어려움
 - Text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도곡동주택과 같은 층의 전세가를 확인하고 Text 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 한번씩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유사 전세가액을 확정함
 - Text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서 적정임대료 산정의 방법으로 Text 적정임대료를 계산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 Text 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Text 적출금액 산정함
- Text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각각의 사업연도의 개정된 내역 및 시
 Text 행일을 참고하여 적용함

Table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1. <u>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u>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2017.3.10, 2018.3.21, 2019.3.20, 2020.3.13, 2021.3.16, 2023.3.20, 2024.3.22, 2025.3.21>

Text O (②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부인) 도곡동 주택은 조사법인의 업무와

Text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

Text 및 재산세, 지급이자 등 보유시 비용을 손금부인함

Table

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 1. <u>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8.12.24>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Text O (③종합부동산세 경정) 조사법인은 도곡동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 Text 배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Text - 조사법인의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물건에 포함하여 종합 Text 부동산세 경정

Table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Text O (납기내 현금납부) 조사법인은 과세타당성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

Text 으며, 조사종결 후 조기결정 신청 및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Text 현금 납부함

Special

적출3

❖ 법인세 기타 항목(항목코드: 011607) 임의포기 해외매출채권 소득처분 변경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O (신고내용) 조사법인의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에 따르면 매출채권 두 건을

Text 회계상 대손처리한 후, 대손요건 불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Text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함

Text <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발췌 >

Table

7	2 3	② 계정 과목	② 채권	② 대손	26	대손	충당금상	계액
	일자	과목	내역	사유	금액	② 계	(원 시인액	@ 부인액
	2020-06-30	매출채권	매출채권	폐업	207,569,971	207,569,971	О	207,569,971
	2020-12-31	매출채권	매출채권	폐업	1,061,554,963	1,061,554,963	0	1,061,554,963

Text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발췌 >

Table

	①과 목	②금 액	③영업손익 조정금액		④처 분	⑤조 정 내 용
1	매출채권	1,061,554,963	(0	300 (기타소득)	당기 매출채권 익금산입 기타소득 처분함
ı	매출채권	207,569,971	ļ	0 50	00 (기타사외유출)	당기 매출채권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Text ○ (결산보고서 분석) '19~'20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매출채권 명세서를 비교한 바,

Text 19년말 계상된 미국 해외 매출채권이 '20년 제각되었는데 외환수취자료

Text 에서 채권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Text - '19년말 계상된 매출채권과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을 환율로 환산하면 동일한
Text 금액인 것으로 볼 때 미국자회사와 미국지사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것
Text 으로 추정함

Text ○ (소득처분 검토) 대손요건 불비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Text 자회사 매출채권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음에도 미국 지사 매출채권은

Text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기에 소득처분 적정여부 검토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법령

Table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u>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Table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u>그 분여</u> <u>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u> <u>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u>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O (사실관계 확인) 조사착수 후, 조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Text 손금불산입한 사유, 해외매출채권 미회수 사유, 이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

Text 하는지 여부, 임의포기한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Text - 미국의 해외현지법인에게 매출한 매출채권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Text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적정함

Text - 미국지점이 매출한 매출채권의 경우 매출이후 오랜기간 회수하지 못한 장기 Text 미회수채권으로 미국지점이 현재 철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소명

Text O (회수노력 여부) 조사법인은 미국지점에서 해당 매출채권 회수 노력을

Text 확인할 수 없고 해당자료는 제출된 품위서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바가

Text 없어 임의로 포기함을 인정함

Text 나. 과세근거 확보 및 처분 유지

- Text **(소득처분 변경)** 미국지점의 해외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대해 기타소득
 Text <mark>으로 소득처분 변경</mark>
 - Text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1항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위
 Text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Text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Text 따라서 해당 해외매출채권은 기타사외유출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Text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 Text O (조사법인 인정)조사법인은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기타소득'에 Text 해당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소득처분통지서에 따라 Text 원천세를 현금납부하고 불복 없이 조사 종결됨